

# 직제 규정

- 제정 : 1998. 01. 09
- 개정 : 1998. 09. 01
- 개정 : 2011. 04. 01
- 개정 : 2012. 05. 07
- 개정 : 2013. 03. 01
- 개정 : 2015. 08. 01
- 개정 : 2017. 05. 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조직의 대강(大綱)을 정하여 체계 있는 교무(校務)의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 제2장 편 제

**제3조(기구)** 이 학교는 10개 단과대학·일반대학원·10개 특수 대학원 및 대학교 본부로 구성한다.

**제4조(단과 대학 및 대학원)** ① 단과 대학은 국제대학·교양대학·인문사회대학·경상대학·공과대학·IT대학·건강과학대학·미술대학·음악대학·융합문화예술대학을 둔다.

② 대학원은 일반대학원·행정대학원·경영대학원·교육대학원·공학대학원·호텔관광대학원·미술대학원·음악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고용서비스대학원·스포츠과학대학원을 둔다.

**제5조(부속기관)** 이 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두며,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1. 중앙도서관
2. 박물관
3. 출판부
4. 학보사
5. 방송국
6. LAB실
7. 정보전산원
8. 고운미술관
9. 첨단과학기술연구원
10. 직장예비군연대
11. 기숙사
12. 영자신문사
13. 보건실

14. 아동가족상담센터
15. 삭제
16. 양성평등센터
17. 벨칸토아트센터
18. 사회봉사센터
19. 장애학생지원센터
20. 체육부
21. 학생군사교육단
22.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23. 수원화성융합문화센터
24. 환경안전원
25.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
26. 뉴메이킹센터
27. 창업지원단
  - 가. 고운창업지원센터
  - 나. 창업보육센터
  - 다. 기업가정신센터
  - 라. DS&ML센터
28. 대학교육혁신단
  - 가. 교육성과관리센터
  - 나. 교수학습개발센터
  - 다. 산학교육혁신지원센터
29. 정보보호센터

제6조(부설연구소) 이 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동고학연구소
2. 산업기술연구소
3. IT연구소
4. 스포츠과학연구소
5. 폐기물자원화기술연구소
6. 조형연구소
7. 하천환경기술연구소
8. 학생생활상담연구소
9. 삭제
10. WISE경기지역센터
11. 통계조사연구소
12. 바이오산업연구소
13. 고운교양교육연구소
14. 문화콘텐츠디자인연구소

**제7조(부설교육기관)** 이 학교에 다음의 부설 교육기관을 둔다.

1. 사회교육원
2. 국제어학원
3. 특수교육원
  - 가. 한국어문화교육원
  - 나. 미래인재아카데미
  - 다. 영재교육원
  - 라. 음악영재아카데미

**제8조(위원회)** 이 학교의 각종 중요사항을 심의·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장 대학교본부

**제9조(대학교 본부)** ① 대학교 본부에 미래전략실·경영지원실·비서실·기획실·홍보실·평가실·국제협력처·교무처·입학관리처·학생지원처·취업지원처·총무처·대외협력처·연구처·감사실 및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전항 각 부서의 하부조직으로 미래전략실에 발전전략 기획과, 경영지원실에 경영지원과, 비서실에 비서과, 기획실에 기획담당 및 예산담당, 홍보실에 홍보과, 평가실에 평가과, 국제협력처에 국제협력담당과 국제교육개발담당, 교무처에 교무과 및 학적과,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과, 취업지원처에 취업지원과, 총무처에 총무과·경리과·후생관재과·영림과·관재과·업무과·환경관리과,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과, 연구처에 연구과, 감사실에 감사과를 두며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각 단과 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과를 둔다.

### 제4장 직위·직무·직급

**제10조(직위)** ① 각 부서에 실·처장과 과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부서 이외의 실(처)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직무)** 단과 대학, 대학원 및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담당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직급)** ① 교원의 직급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무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참여, 부참여, 참사, 부참사, 주사, 부주사, 서기, 부서기
2. 기술직

사서직: 사서참사, 사서부참사, 사서, 부사서

전산직: 전산부참사, 전산기사, 전산부기사, 전산기사보

3. 기능직: 운전, 전기, 필경, 보일러, 교환, 사무보조, 고용원

4. 촉탁직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의 보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